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48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황 희 · 김원이 · 김 윤
김교홍 · 복기왕 · 허종식
안태준 · 이광재 · 문진석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 중 “제78조제5항”을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사업시 행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 다.</u>
③ ~ ⑦ (생 략)	<u>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u>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 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 자 등 권리자는 <u>제78조제4항</u>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가 있을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 ----- ----- ----- <u>제78조제5항</u> ----- ----- -----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4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u>제78조제5항</u>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3. 4. (생략) ③ (생략)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78조제6항</u>----- ----- -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